

사 규 명	투자심의위원회 규정	사규번호	HR-302		
기안부서	전략기획실	개정주기	필요 시		
공개여부	공 개	제정일자	2022.03.01		
제·개정 이력					
구분	제·개정		년월일	제·개정내용	
	전면	부분			
0	○		2021.04.29	투자심의위원회 규정	
1		○	2022.03.01	제 4 조 심의위원 CFO 추가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관 련 규 정			승인자	[인명]	사 장
			검토자	[인명]	
			작성자	[인명]	

## 제 1 장 총 칙

## 제 1 조 【 목 적 】

이 규정은 「(주)한국카본」에서 기존사업의 확장 및 신규사업 전개를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, 이러한 투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투자 실패 위험을 줄이고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【 적용범위 】

이 규정은 경영다각화를 위한 신규 및 기존 사업의 투자 심의에 적용한다.

## 제 3 조 【 기 능 】

투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는 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심의 대상(금액) : 1 억원 이상 투자금액
  2. 투자 심의 대상(자산) : 유가증권 및 유형/무형자산 투자  
(토지/건물/기계장치 및 유가증권/지적재산권 취득 등)
  3. 투자 관련 해당 심의는 반드시 “투자집행 품의서 결재”에 선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③ 투자 집행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고 실시하며 필요 시 이사회에 상정한다.

## 제 4 조 【 구 성 】

- ① 심의위원장 : 사장
- ② 심의위원 : 부사장, 각 사업본부장, 경영관리본부장, CFO, 전략기획실장(부재 시 차석 직급자), 연구소장(기술관련 투자 시)
- ③ 투자부서 : 해당 사업본부장, 임원, 실무 책임자 1 명(회의록 작성/공유 목적)
- ④ 필요 시 투자 심의 전, 투자 검토 전문가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.

## 제 5 조 【 소 집 】

- ① 위원회는 매월 첫째주, 셋째주 화요일(월 2 회) 14 시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. 필요 시 사업본부장의 발의 및 부사장의 동의 하에 수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투자 부서의 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상정 안건을 직접 부의하여야 하며, 부의 시 사업계획서 [별지 1]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계획서[별지 1]는 심의위원회 개최 4 영업일 전 까지 전략기획실로 통보하고, 전략기획실은 3 영업일 전 까지 심의위원에게 서면 or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심의 일자는 조정이 가능하다.

## 제 6 조 【 심 의 자 료 】

- ① 투자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사업계획서[별지 1]를 제출하고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투자 목적, 내용(건물/설비 등), 시기, 금액 등 투자사업부의 사업계획 설명안
  2. 투자를 통한 매출/이익 확대(기존대비 및 지속가능여부), 회수계획 등 투자효과
  3. 투자 관련 시장의 성장성, 정부 정책 관련성, 자금계획 他 사업부와의 연계성
  4. 회사의 성장방향과 합치여부,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자금 활용 가능성 등.
- 다만, 기존설비의 교체를 위한 투자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투자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1 호의 사항만 포함 할 수 있다.
- ② 투자가 필요한 부서의 본부장 등은 해당내용을 검토하여, 위원회 상정 안건을 직접 부의하여야 하며, 사업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에게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제 7 조 【 의사 및 의결 】

- ① 심의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심의위원 2/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심의위원 2/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투자심의위원회 당일 투자사업타당성 분석표 [별지 2]를 전략기획실에서 배포한다.
- ④ 위원들의 투자 찬반 여부는 투자사업타당성 분석표[별지 2]의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한다. 당일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, 위원들은 개인의 의견을 전략기획실로 사후 통보한다.
- ⑤ 위원들의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기획실은 심의 의결서 [별지 3]를 작성하고,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.
- ⑥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 의결서[별지 3]는 전략기획실에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사업부로 발송한다.

#### 제 8 조 【 회의록 】

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, 출석위원의 확인 서명 후, 사업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.

#### 제 9 조 【 기밀 유지 및 기타 】

사업 성격상 기밀 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[부칙 1] <제정 2021.04.29>

#### 제 1 조 【 시행일 】

이 규정은 2021 년 0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 2 조 【 개정시행일 】

이 규정은 개정사항은 2022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

[별지 1]

## 사업 (투자) 계획서

작성일 : \_\_\_\_\_

부서명 : \_\_\_\_\_

본부장 : \_\_\_\_\_ (인)

## 투자 개요

년 월 일

사업부명	투자 구분
예상투자액	투자 시기
사 업 소 개	
1. 투자 안건	
2. 투자 사유	
3. 주요내용	
4. 비고 사항	

※ 투자 개요 : 사업계획서 요약 작성



## 자금조달 계획

자금 자원 조달 계획 (단위 : 원)			
투자금액	자기자본	외부조달	계
세부 조달 계획 (단위 : 원)			
자기자본			
외부자본	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
참고사항			

## 인원 고용 계획

고용계획 (단위 : 명)							
구분	상시고용인원 (A)	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(B)				투자 후 (A+B)	
		N (신청년도)	N+1	N+2	N+3		
계							
연구/개발							
사무/영업							
생산							
고용사유							
연구/개발							
사무/영업							
생산							

※인원 고용 계획 : 신사업 추진 시 작성

## 투자(안)의 사업성 전망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추정 재무제표 (예상액)								
연도	N+1 (사업개시일)	N+1	N+2	N+3	N+4	N+5	N+6		
매출액									
영업이익									
연평균 증가율 (CAGR)				매출액		%	영업이익		%
산업 분석 및 사업성 전망									
1. 시장 현황									
2. 수요처									
3. 사업계획과의 부합여부									
4. 투자로 인한 기대 효과									

※사업성 전망 : 신사업 추진 시 작성

\* 상정 안건 제출 시,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



[별지 2-1] 신규 사업 투자 시

## 투자사업타당성 분석표

○ 투자명 :

부서	
성명	

구분		평가 보고서	의견
사업계획과의 관계	부합정도		
수요조사	합리성/적정성		
사업기본구상	타당성		
투자비용/사업전망	초기 비용		
	추가 비용		
	사업 전망		
	지속가능성		
수익성평가 (투자 및 회수계획)	투자계획		
	회수계획		
	NPV		
	IRR		
기타사항			
종합 의견 (투자적합도 결정)			

\* 종합의견 : 적정, 수정 추진, 조건부, 재검토/ 부적정 표시

[별지 2-2] 기존 설비 투자 시

## 투자사업타당성 분석표

○ 투자명 :

부서	
성명	

구분		평가보고	심사위원 의견
년간 사업계획	계획보수여부		
대상설비 현황	설비구축현황		
	현재 문제점 (EHS 검토여부)		
	교체 필요성 (EHS 검토여부)		
투자계획 등	투자에정 시기(기간)		
	투자금액 (구매협의여부)		
	교체시 공장 운영 등		
기대효과 (투자 및 회수계획)	Co2 등 유해물질 절감		
	작업능력향상		
	작업 간 안전대책은?		
	교체 예상효과 (금액)		
기타 사항			
종합 의견 (투자적합도 결정)			

\* 종합의견 : 적정, 수정 추진, 조건부, 재검토/ 부적정 표시

[별지 3]

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

의결 일시	장소	제안 부서	담당부서장

1. 투자명 :

2. 심의 결과 :

3. 주요 내용 :

투자심의위원장(인)